

##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5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1년 월 일  
발 의 자 : 김영길 · 고호근 · 황세영 · 이효상  
· 서경환 · 김순점 의원(6명)

### 1. 개정사유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 
수정 또는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 
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일부 조문 변경
  - ▶ “폐질등급” ⇒ “장애등급”
- 법령정비 기준
  - ▶ 다음 각호의 1과 ⇒ 다음 어느 하나
  - ▶ 그러하지 아니하다 ⇒ 그렇지 않다
  - ▶ 하여야 ⇒ 해야
  - ▶ 기타 ⇒ 그 밖에

### 3. 근거법규

-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- 울산장애인조례재개정추진연대 건의사항

### 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

##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 중 “각호의 1과” 을 “어느 하나와”로 한다.

제4조 제1항 중 “각호의 1과” 을 “어느 하나와”로 한다.

제5조 제1항 중 “폐질등급” 을 “장애등급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1항 중 “각호의 1과” 을 “어느 하나와”로 한다.

제6조 제2항 중 “제1호 서식에 의하여” 을 “제1호 서식에 의해”로 “청구하여야 한다” 을 “청구해야 한다”로 한다.

제9조 제1항 중 “각호의 1에” 을 “어느 하나에”로 한다.

제10조 제4호 중 “기타” 을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 을 “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제13조 제3항 중 “통보하여야 한다” 을 “통보해야 한다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<u>각호의 1과 같다.</u> 1. ~ 3. (생 략)  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<u>각호의 1과 같다.</u>  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----- 제45조에 규정된 <u>“폐질등급”</u> -----.  제6조(보상금의 청구)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<u>각호의 1과 같다.</u> ② ----- 제1호 서식에 <u>의하여</u> ----- 청구하여야 한다.  제9조(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) ① (생 략) ② ----- 다음 <u>각호의 1에</u> 해당하는 -----.  제10조(심의회의 기능) 1. ~ 3. (생 략) 4. <u>기타</u>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 제11조(심의위원의 임기) ----- 만료된 때에는 <u>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	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<u>어느 하나와 같다.</u> 1. ~ 3. (현행과 같음)  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<u>어느 하나와 같다.</u>  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----- 제45조에 규정된 <u>“장애등급”</u> -----.  제6조(보상금의 청구)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<u>어느 하나와 같다.</u> ② ----- 제1호 서식에 <u>의해</u> ----- 청구해야 한다.  제9조(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다음 <u>어느 하나에</u> 해당하는 -----.  제10조(심의회의 기능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</u>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 제11조(심의위원의 임기) ----- 만료된 때에는 <u>그렇지 않다.</u>
제13조(심의회의 회의) ① (생 략) ② (생 략) ③ -----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제13조(심의회의 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## 의안심사보고서 (의안번호 852)

**1. 의안명 :**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

### 2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1. 10. 7(금)
- 나. 제안자 : 김순점 의원 외 5명
- 다. 위원회 회부 : 2011. 10. 13(목)
- 라. 위원회 심사 : 2011. 10. 14(금)

### 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순점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일부 조문 변경
  - ▶ “폐질등급” ⇒ “장애등급”

### 4. 근거법령

-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- 울산장애인조례재개정추진연대 건의사항

### 5. 검토의견 (전문위원 배정숙)

-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였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